


참고 32

신청·등록 지급조회 서비스를 통한 조회서비스 제공

1 (등록증조회) 신청인이 직접 PC 및 모바일을 통하여 기본직불금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예시화면>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록번호 제23호
기본: 소농직접지불금(O) - 연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			
성명 (법인명)	김길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8812311
주소	(12345)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72 금강맨더리 돌 IT타워 B동 1109호	전화번호	01012345678
입금계좌			
은행명	지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123

농지주소	합계	농업진흥지역 면적(㎡) (논+밭)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	
		논	밭	논	밭
양학읍 양학동 1234-5678	200,000	200,000	20,000	20,000	
양학읍 양학동 1234-5678	200,000	200,000	20,000	20,000	
양학읍 양학동 1234-5678	800	300	250	250	
합계	3800	1800	1000	1000	

위 등록신청인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C)) 연직접지불금(O)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등록증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의의 불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지급조회) 신청인이 직접 PC 및 모바일을 통하여 기본직불금 신청등록 및 지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예시화면>

신청등록 및 지급정보 조회

성명/법인명(생년월일)	직불금사유형	지급대상면적(㎡)	지급대상금액(원)
김길동	소농	4,843	1,200,000

- 신청면적 : 신청서 신청당시의 면적
 - 선정확인(면적) : 신청면적중 시군구/읍면동 담당자 확인후의 면적
 - 지급대상면적 : 선정면적중 이행점검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이행점검 부적격면적제외) 최종지급대상이 된 면적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선정확인(면적)(㎡)	지급대상면적(㎡)
김길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090	1,090	1,090
김길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254	1,254	1,254
김길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736	736	736
김길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763	1,763	1,763

닫기 >

4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

- 가.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급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관할 읍·면·동에 변경신고, 변경신청(원칙, ~6월 중)
- ▽ 다만, 다양한 농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9.3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변경요청하여 등록정보 현행화 추진
- 나. 검증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검증 결과(참고 23 **1~3**) 부적격인 경우 읍·면·동에서 재검증하여 등록정보 현행화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① (변경등록) 검증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 변경, 농업인의 변경 신고(농업경영체 변경포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수정(~9.30일)

* 다만, 승계처리는 직불금 지급 전(매년 12.31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읍·면·동 담당자에게 있으나 임의 수정 방지를 위하여 시·도, 시·군·구 담당자의 변경승인 이후 가능

* (읍·면·동) 커뮤니티 > 업무요청 → (시·군·구) 커뮤니티 > 업무요청 > 승인 → (읍·면·동) 해당 경영체번호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주민번호, PNU)를 기반으로 필지 추가, 등록취소 등

- 토지대장 검증 결과 필지의 분·합·필, 환지 등이 확인되어 토지대장 이력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 대상 농지DB 업데이트(참고 32)

- ▽ 농업인의 요청에 의한 기본직불 변경등록 내용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먼저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수정하고 농업경영체 변경 요청(시스템 연계 등)

* 농지 분·합필, 환지 등으로 인한 경작면적 변경, 농지전용 등 직불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경영체 등록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 다만,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은 기본직불 등록정보만 변경

- ▽ 변경등록기간 종료(6월중) 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하여 필지별 신청 면적을 초과하여 면적수정 불가

* 다만,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권, 임대차 변경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변경 가능

- ▽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농업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 하고 필요시 기본직불 변경등록증 발급

- ▽ 원칙적으로 기본직불금 등록증발급 시점 이후 기본직불 신청·접수는 불가

② (등록정보 검증) 기본직불 등록증 발급 이후 통합분석검증시스템(DW)을 통하여 토지대장, 주민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자격 요건에 대하여 검증 추진

▽ 읍·면·동 담당자는 기본직불 시스템의 검증 결과를 참고하여 자격요건 부적격 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부적합 내용 통보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요구

자격요건	검증항목	원 인	조치사항	자격요건 추가 확인
①농업인	①주민정보검증	▶등록정보와 주소지 불일치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G4C)	▶①-⑥ 주업요건
		▶사망, 해외 이주 등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승계대상자 검토	▶승계요건 확인
	②경영체제외	▶농업경영체 제외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승계대상자 검토	▶승계요건 확인
	③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등록정보에 등록된 자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으로 직불금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환수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부정수급자 등록정보에 착오로 등록된 경우 부정수급자 등록정보를 수정	
	④계좌검증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계좌번호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여부 확인하여 예외처리	
	⑤주업요건	▶아래 사항을 검증하여 모두 부적격일 경우 *(1차) 도시거주 and 시군구 기준 주소지 내 농지 1천㎡ 미만 *(2차) 도시거주 and 시군구 10천㎡ 미만	▶연접여부 확인 ▶연접여부 확인결과 부적격인 경우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⑥신규등록자	▶등록연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직전에 타인이 받은 면적을 제외하면 0.1ha 미만인 경우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⑦농업인 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한 직전년도 농업외종합소득 검증결과 3700만원 이상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다만, 농업인이 세무서 등을 통해 소득의 경정신고를 한 결과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정상처리	농식품부 주관 검증 및 등록취소 (9월 말)	

자격요건	검증항목	원 인	조치사항	자격요건 추가 확인
	⑧지급대상 농지의 면적합(폐경 및 휴경 제외) 0.1ha 미만	▶농관원 농지형상 점검결과, 실경작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 0.1ha 미만인 경우	▶신청단계는 신청서 인쇄 불가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농식품부 주관 검증 및 등록취소 (10월 중)
	⑨부정수급, 실경작 등 현장점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분석하여 부정수급 우려자에 대한 현장점검(5~9월) *농자재구매이력, 관외경작자, 보조사업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판정자 등	▶(1단계) 농업인 소명 요청 ▶(2단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확인 ▶(3단계) 기본직불 등록취소 ▶(4단계) 부정수급자 여부 검토 및 행정처분	▶현장조사 대상
	⑩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1~인지 지원등급)	▶기본직불금 등록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수혜기간 등에 대한 검증 자료 수신	▶(1단계) 현장조사 실시 ▶(2단계) 실경작자가 아닐 경우 실경작자 확인 ▶(3단계) 실경작자가 승계대상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 ▶(4단계) 승계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등록취소	▶현장조사 대상
	⑪부정한 농지분할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또는 △다른 농업법인이 임대차하여 등록/직불금 등록·수령한 경우 ▶(불법 전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1)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2)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농가 구성원간의 농지분할) 농가가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농가 구성원 (소농직불의 농가구성원 기준)이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수령한 경우	▶(1단계) 농업인 소명 요청 ▶(2단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확인 ▶(3단계) 기본직불 등록취소 ▶(4단계) 부정수급자 여부 검토 및 행정처분 *특히 농지분할이 확인된 경우는 엄격히 행정처분 조치	▶현장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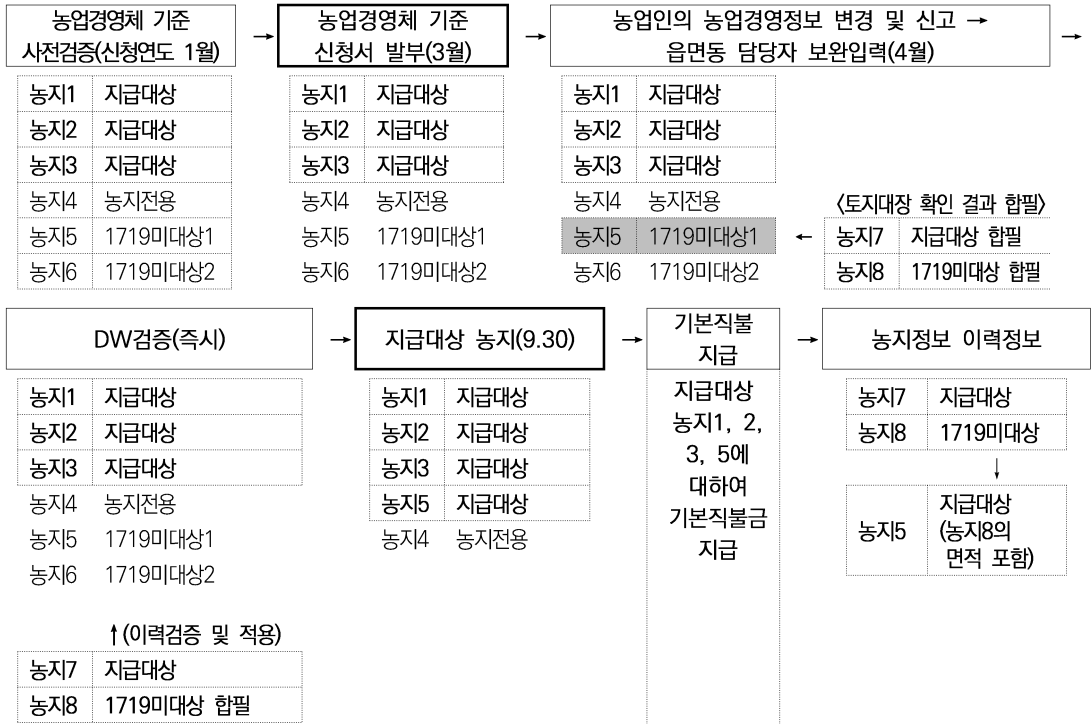
자격요건	검증항목	원 인	조치사항	자격요건 추가 확인
②농지	①토지대장	▶말소, 분합필	▶부적합 필지 토지대장 확인하고 분합필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이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업 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경영체 변경전까지 ②-③ 경영체제외 부적합 → 변경 후 적합
		▶재측량 등으로 공부상 면적 부적합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 ▶시스템을 통해 농업 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경영체 변경전까지 ②-③ 경영체제외 부적합 → 변경 후 적합
		▶소유자 변경	▶임대차계약자 변경사항 확인 ▶이에 따른 실경작여부 추가 확인	
	②농지중복신청	▶필지 기준 두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 기본직불 등록이 되어야 검증 가능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 실경작자	
	③경영체제외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조치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④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등록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 소유한 농지	▶해당 필지 등록취소 ▶공동경작인 경우 등록자 본인 지분면적만 등록하고 예외처리	
⑤농지전용	▶농어촌공사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해당 필지 등록취소	▶지자체 농지부서의 협조를 받아 농지전용 여부 확인 ▶중장기적으로 농지대장 현행화	
⑥국유지	▶대부계약정보 중 (1) 대부계약자, (2) 면적, (3) 계약기간 등 검증한 결과 불일치한 경우	▶등록자로부터 대부계약서 제출요청 및 검토 * (1)-1 대부계약자가 불일치한 경우 농가 구성원이 계약한 것이 확인되면 예외처리 (1)-2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나, 분할납부 등으로 구매 중인 경우 예외처리	▶중장기적으로 농지대장 현행화	

자격요건	검증항목	원 인	조치사항	자격요건 추가 확인
			(2) 면적이 부적격인 경우 해당 필지의 본인소유 지분 확인 (3) 제출한 대부계약서의 계약기간 확인하고 종료된 경우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⑦신규농지	▶1719 직불금 미지급 농지	▶부적합 필지 토지대장 확인하고 분합필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이력정보)	
	⑧진흥/비진흥	▶기본직불 등록된 진흥/비진흥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등록정보와 불일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보확인 및 수정(~7월)	
③소농 직불	①직전 연도 기준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최근 3년간 농업경영체 매월 백업 정보 중 해당 농업인 주민번호 기준 3년(36개월) 미유지 *경영주, 경영주의 구분 없음 ▶최근 3년간 해당 농업인 직불금 연속 3회 미만 수령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면적직불로 인쇄 ▶면적직불 전환	
	②직전 연도 기준 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현주소지 기준 도시지역 and 직전 연도 전입일 3년에 포함 ▶현주소지 기준 농촌지역 and 직전 연도 전입일 3년 미만 * 농촌-농촌지역 거주지 이동 포함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면적직불로 인쇄 ▶도시지역 거주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등본·초본을 열람하여 재검증 ▶면적직불 전환	
	③농업인 농업외소득 20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한 직전년도 농업외종합소득 검증결과 2000만원 이상	▶면적전환 및 농업인 통보 *다만, 농업인이 세무서 등을 통해 소득의 경정신고를 한 결과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 인정	농식품부 주관 검증 및 면적전환 (9월 말)
	④농가구성원 농업외소득합 45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한 농가구성원의 직전년도 농업외종합소득합 검증결과 4500만원 이상	▶면적전환 및 농업인 통보 *다만, 등록정보의 농가 구성원이 잘못 포함된 경우 대상자 제외 및 재검증	농식품부 주관 검증 및 면적전환 (9월 말)

자격요건	검증항목	원 인	조치사항	자격요건 추가 확인
	⑤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농가 구성원의 주민번호로 등록된 토지대장의 전·답·과수원의 면적합이 1.55ha 이상	▶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에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 확인 ▶부적격인 경우 면적전환 및 농업인 통보	
	⑥동일경영체 소농 중복신청	▶동일한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들이 각각 소농직불 신청	▶농가구성원 요건 확인 후 동일 농가인 경우 모두 면적전환 ▶아울러 농가 구성원간의 농지분할 여부 조사 후 부정합 농지분할이 확인된 경우 엄격하게 행정처분	
	⑦농가단위 소농다수신청	▶농가구성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달리하여 각각 소농직불 신청	▶농가구성원 요건 확인 후 동일 농가인 경우 모두 면적전환	
	⑧등록된 농지를 면적 직불금으로 산정할 경우 130만원 이상	▶소농직불 등록대상자 중 농지면적을 참고하여 면적직불금으로 산정결과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적직불 전환	
	⑨축산업소득 5600만원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축종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단가, 회전율 등을 고려 560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소득세법」 제19조제2항)되며, 신선 농축산물은 비과세 대상으로 10억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 150%로 산출	▶농업인에게 직전년도 축산업소득(순수익) 확인 후 56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 동의 후 면적직불 전환	
	⑩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시설종류 및 재배품목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품목별 순수익 등을 고려 38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③-⑨와 동일	▶농업인에게 직전년도 시설재배업소득(순수익) 확인 후 38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 동의 후 면적직불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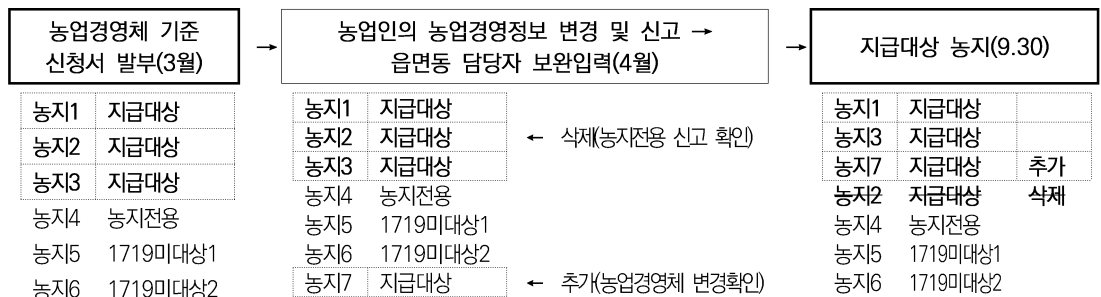
☑ 지급대상 농지이나 토지대장 검증 결과 분합필, 환지 등으로 기본직불 등록 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토지대장 이력 정보를 입력

1 농지의 정보변경으로 신청서에 등록대상 농지의 누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



* 분필, 환지 등의 농지정보변경 사례도 상기와 유사하게 처리 요청

2 기본직불 신청접수 이후 등록자의 농지변동이 확인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서는 해당 등록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필지 조정



참고 34 승계대상자 처리

☑ (승계사유) 기본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 (승계대상)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승계 구분 처리

㉠ 기본직불 등록신청단계 ㉠

(직전 연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등록 연도 기본직불 등록신청 접수 전에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 승계대상의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승계대상자로 접수 / 승계대상의 자격요건 부적합하면 신규
- ☞ 승계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

㉡ 기본직불 등록~지급 전 ㉡

(기본직불을 등록한 자가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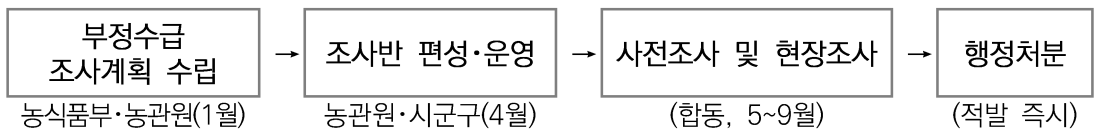
- ☞ (동일경영체 승계) 기본직불 등록자와 승계 대상자가 동일 경영체에 있을 경우 신청자변경(지급대상 농지는 반드시 동일경영체 승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승계대상자가 다른 경영체에 있고 기본직불 등록자)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승계대상자의 경영체로 이전하고 필지 추가 등록
- ☞ (승계대상자가 다른 경영체에 있으나 기본직불 미등록자)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승계대상자의 경영체로 이전하고 필지 추가 등록 + 9.30일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외종합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세무소) 소득자료 첨부
- ☞ (승계대상자가 경영체미등록자) 승계대상자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규경영체등록 및 필지 추가 + 9.30일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외종합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세무소) 소득자료 첨부

㉢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승계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 ☞ 등록취소 처리

가. 검증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검증 결과(참고 23 ㉔) 점검대상인 경우 농관원·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추진

- * (실경작 위반)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농자재구매내역無 보조사업불일치자(친환경, 농업재해보험 등),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인지지원등급), 친환경·GAP인증 불일치자 등
- * (농지분할 의심자)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등에 임차한 경우, 불법 전대, 농가 구성원 간의 임대차계약



① (계획수립) 농식품부 및 농관원은 기본직불 수령자, 사업연도 등록자를 대상 실경작, 농지분할 등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조사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 → 기본직불 시스템을 통해 농관원·지자체 공유

- (1) 농자재구매 이력(농약, 비료, 종묘 등)이 없는 신규등록자 및 관외경작자*
 - * 기본직불 신청자의 주소지가 지급대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우선순위 50km 이상) 이상인 경우(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2) 상호 교차점검이 가능하고 실경작자에게 지원하는 농림사업 지원 대상 불일치자
 - * 친환경직불, 재해보험 가입자, 친환경·GAP 인증 불일치자, 맞춤형농지 지원대상자(후계 농업인, 청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등 단계적으로 확대
- (3) 장기 요양등급판정자(I~IV), 출입국기록 점검 결과 국내 미거주 또는 장기 체류자
- (4)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한 농지 분할 등록·수령이 의심되는 대상자
 - * (1)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등이 등록/수령, (2) 불법으로 전대하여 임차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농업인이 등록/수령, (3) 농가구성원 간의 농지분할
- (5) 기타 사회적 이슈, 언론보도,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반 편성 인원, 기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의 우선순위 선정. 다만, 장기 요양등급판정자, 장기 해외체류자, 농지 분할 우려자 등은 전수조사 추진

- ▽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패턴을 분석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검증체계의 고도화 추진
- ▽ 농관원 및 지자체는 상시적으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자체 단속반 편성 등을 통해 부정수급 수시 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농관원은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 ▽ 특별·정기조사 등 조사계획에 따라 ^(1차)읍·면·동은 조사 대상에 대하여 서류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 ^(2차)농관원·시군구는 지도·점검 및 합동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합동조사 계획수립
- ▽ 농관원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행정절차, 처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부정수급 조사 등 수행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관리

② (조사반)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하여 농관원 및 지자체는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고 매년 시·도, 시·군·구와 협업하여 합동조사반 운영

구 분	주요 업무	조사반 구성	일정
농관원·지자체 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홍보) 직불금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안내 ▶(사전조사) 기본직불 등록정보, 각종 행정정보, 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부정수급 발생 우려 항목 선정 * 부정수급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포함 가능 ▶(수시조사)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부정수급 신고 ▶(특별조사)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협조, 사회적 이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조사 	농관원 지자체	연중
농관원·지자체 합동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조사) 사업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조사 * (읍면동) 서류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 등록취소 등 → (합동조사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여부 조사 및 행정처분 *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시 실경작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농관원, 시군구 합동 조사에 포함 	농관원 지원 + 시군구	등록 이후 (상시)

-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 시·군·구, 읍·면·동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함께 사업연도 조사계획에 따라 합동조사반을 편성
 - 합동조사반은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사
 - 농관원은 조사반원 대상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실시
- ▽ 지자체는 직불금 신청 관할지의 조사 대상자 수, 가용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점검계획 수립

③ (조사) 사전 및 현장 조사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으로
농업인 등의 소명, 사실 여부에 대한 증빙 과정으로 업무처리

- ▽ 행정정보를 수집·분석한 사전 조사 결과, 부정수급 신고 등은 대상 및 위반 사항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사전에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처분 금지
- ▽ 조사 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 입회 등의 요청을 7일 이내 사전통지(법 제17조제5호). 다만, 시급이 요구*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 조사 가능
 - *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 실경작, 농지분할 등 관련 증빙서류 요구, 탐문조사, 당사자로부터 위반 여부 확인 등 조사를 위한 입회 요구 및 관련 자료 확보
 - 행정기관은 현장 조사 후에 수집된 정보 및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출장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문서 등록하여 기록관리
 - * 부정수급 신고,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공개금지
- ▽ 조사결과 자격요건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 조사대상자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소명

부정수급 조사 절차

① 조사대상 선정

△ 신고·제보, 통합분석검증시스템(DW) 기반 부정수급 의심자*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간 불일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인지지원등급), 농자재구매이력無 등

② 사전조사(정보수집)

△ (농업경영체) 기본 등록정보를 통해 자경·임차여부, 임차기간, 과거 재배품목 등 조사

△ (연계정보) 농자재구매이력, 재해보험, 계약재배, 타 지원사업 등 연계시스템·자료 수집을 통해 정보를 비교·분석, 조사대상자 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사

△ (신청서류) 조사대상자의 직불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 첨부서류 확인

△ (신고인조사) 신고건의 경우 신고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의 전후 맥락 및 배경 등 파악

③ 현장조사

△ (필지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필지의 위치, 재배 품목, 생육상태 및 관리상태 등 확인

△ (주변인 조사) 조사대상 필지 주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경작자 등을 탐문조사

△ (실경작인 조사) 실경작인이 조사대상 필지에 종사하였는지 확인 및 임대차계약관계, 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방법,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방법 등을 확인

△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작물별 재배과정에 대해 농작업 직접수행 여부 및 농자재 구입내역,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등에 대해 조사

△ (확인서 징구) 자필 작성이 원칙이며 임의성을 확보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필지 지번, 공부상면적과 실경작 면적, 위반기간 및 위반내용,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④ (행정처분) 실경작, 농지분할 등으로 부정등록이 확인된 경우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참고 14-1) 등록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제한 조치

▽ 농관원, 읍·면·동 현장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등록이 확인된 경우 관할 시·군·구(관할 읍·면·동이 속한 시·군·구)에 조사 결과 통보하고 처분의견 제출

부정등록 유형	대상구분	1차 조치(읍·면·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2차 조치 (시·군·구)	3차 조치 (관계기관 통보)	
실경작 위반	신규등록자	등록취소		* 이 경우 등록제한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산출	등록제한 행정처분	
	관외경작자	(전체필지) 등록취소				
		(일부필지) 해당필지 등록취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인지지원등급)	승계대상자 유무 확인 및 자격요건 검증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거짓의 농지분할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록취소			관계부서 통보	
	불법 전대	등록취소			관계기관 통보	
	가족 간의 농지 분할	등록취소				
		소농중복 신청인 경우 모두 면적직불 전환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경작사실확인서" 등 허위서류 제출, 양도세 목적으로 다년간 대리 경작하게 하고 직불금 수령, 불법 전대 행위 적발 등

- 읍·면·동에서는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취소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 직불금 지급 제외조치 사항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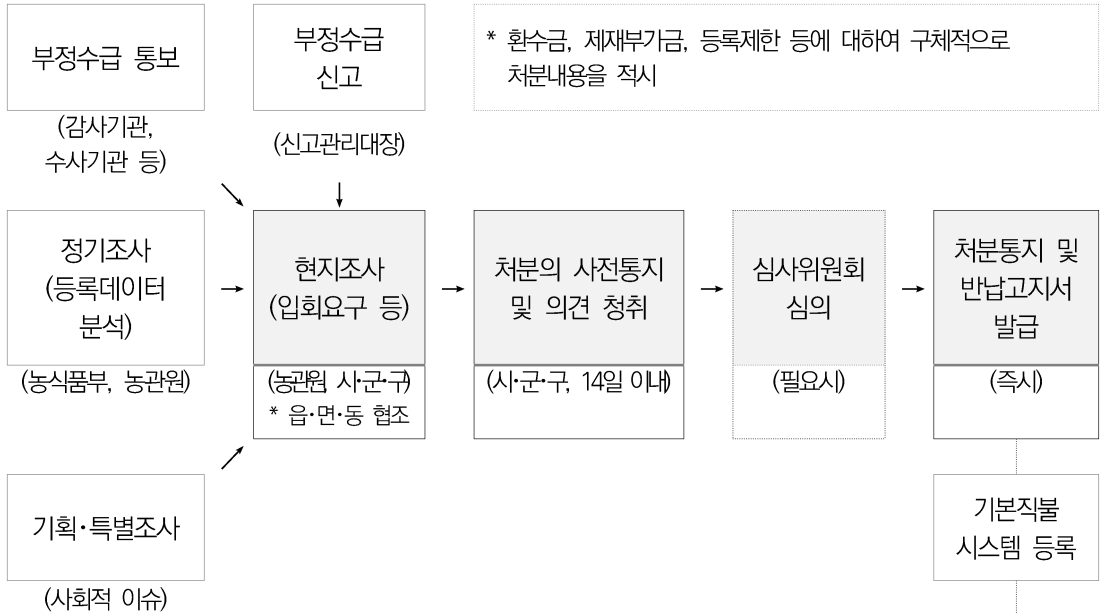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통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처분

- 현장 조사 결과 매년 반복적인 위반사항으로 과거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직불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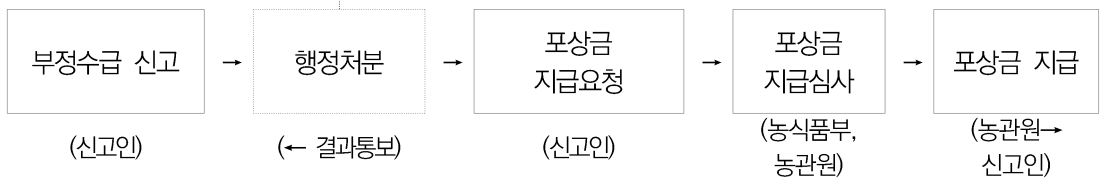
- 농관원으로부터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장(처분권자)은 행정 처분(환수, 등록제한 등) 실시 후 10일 이내 그 결과(처분일자, 처분종류, 환수금액 등)를 농관원으로 회신

참고 35 부정수급 처리 절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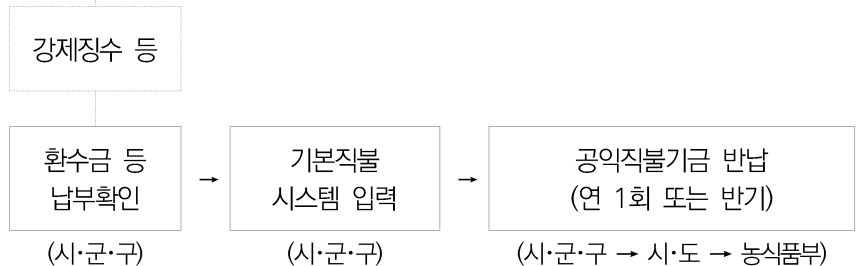
■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절차 ■



■ 포상금 지급 절차 ■



■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반납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마목부터 타목(카목은 제외한다)까지는 각각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반복위반에 따른 지급제한의 기준은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등록신청 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횟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해야 한다.
- 마.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2020년도 5월 1일부터 2020년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 2021년도부터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